

명예교수 운영 세칙

(제정 2014. 5. 1.)

제1조(목적) 명예교수에 관한 규정 제6조(처우)에 따라 명예교수의 강의시수, 강의연령제한 및 강의료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강의시수) 명예교수의 강의시수는 주당 3학점을 원칙으로 하며, 최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3조(강의연령) 명예교수가 강의할 수 있는 최대 연령은 만 70세가 되는 학기까지로 한다.

제4조(강의료 지급) 명예교수의 강의료는 책임시간 및 강의료지급규정에 따라 특별강의료를 지급하되, 3시간 이내의 강의시간에 대해서는 시간강의료의 2배를 지급하고 3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한 시간에 대해서는 전임교원의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.

제5조(연구실 배정) 명예교수에게는 원칙적으로 연구실을 배정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한 학기에 6학점을 강의할 경우에는 공동 연구실을 배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